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5.9.19. 시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교사도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필수 근무기간 준수의 예외를 적용하며,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 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3제10항 신설)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의무화 등 제도 도입(안
제15조제1항제5호 개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신설)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5.7.8. 시행)에 따라 직종간 상이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승진
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
- 2) 기존 공무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명확히 함
- 3) 공무로 인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교육부장관이 긴급히 특별승진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전에도 특별승진임
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마. 교육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
-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으로 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

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여부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

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
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직하거나
해당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
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해당지역 외의 교육공무원과 인사교류
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5호 중 “교육부장관”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
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⑧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10.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제8조(준용규정)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 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 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u><신 설></u>	제7조의3(파견근무) ①-----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u> <u>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u> <u>있도록 한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① ----- ----- ----- 「공무원임용시험 령」 제14조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u> <u>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u> <u>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u> <u>“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u> <u>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u>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

<신 설>

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여부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⑨ (생략)

<신 설>

1.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 4. (생략)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 ⑥ (생략)

<신설>

고 전직하거나 해당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해당지역 외의 교육공무원과 인사교류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신 설>

<신 설>

<신 설>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⑧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교육부장

관”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9